

물건을 분실했을 때

분실물 중에 은행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있을 경우, 카드 발행처나 통신사에 연락하고, 이용정지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자



노상에서 분실했을 때

시설내에서 분실했을 때

시설에 문의

못 찾았을 때

못 찾았을 때

경찰



경찰서, 파출소에서 분실물 신고서 작성

- 귀국 할 경우, 귀국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메일 아드레스를 기입해 주세요.
- 일본 국내에 본인 대신에 경찰하고 연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 연락처도 기입해 주세요.

경찰에서 분실자에 연락

분실물 발견!

- 분실물신고서는 분실자의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수리하는 곳이고, 분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 분실물신고서에 기재 된 물건의 습득이 있었을 때는, 분실자에 연락을 합니다. 분실물신고서를 토대로 조사나 수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습득자에서 청구가 있을 때는 보로금(물건 가치의 **5%~20%**) 및 물건 보관등에 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로금에 대해서는 경찰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습득자하고 이야기 해 주세요.

분실물이 보관하는 경찰서에서 수령 (원칙)

- ※ 송부에 의한 수령을 원할 경우, 「물건송부의뢰서」 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고 송료(전부 자기부담)하고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 ※ 대리인에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본인이 작성) 하고 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하세요.

경찰이 물건을 3개월간 보관하고 분실자를 찾기 의해서 공고나 관계기관등에 조회조사를 합니다.
※ 우산 의류등은, 공고한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습득했을 때

습득자



노상에서 습득했을 때

시설내에서 습득했을 때

경찰서, 파출서에 제출
(7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습득자권리가 없어집니다.)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출
(24시간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



귀국 할 경우, 귀국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메일 아드레스를 알려 주세요.

「습득물건보관거」는 경찰이 물건을 수령했을 때 습득자에게 교부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습득자의 권리

- ① 분실자에게 보로금을 청구하는 권리
분실자가 판명한 경우, 물건가치의 5%~20%보로금을 분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내 습득의 경우 2.5%~10%)
- ② 3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받을 권리
3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고, 물건 수령을 원할 경우, 습득물건 보관서에 기재된 인수기간 (2개월) 이내에 경찰서까지 수취에 와주세요. (경찰에서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에 의한 수령을 원할 경우, 「물건송부의뢰서」 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고 송료 (전부 자기부담) 하고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법률로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③ 물건의제출,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
분실자에게 물건의 제출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권리의 어느 것을 선택하고 주장하는 것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①및③의경우, 분실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칩니다.
· 보로금, 비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자하고 이야기 해 주세요.

시설의 관리자가 경찰에 제출

경찰에서 반환의 연락이 없고 3개월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은

분실자에게 반환

분실자가 판명한 경우

분실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찰이 습득자에게 연락합니다

경찰이 물건을 3개월간 보관하고 분실자를 찾기 의에서 공고나 관계기관등에 조사등을 합니다.
※우산 의류등은 공고한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